

#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

## 1. 개정이유

- 호가의 실시간 가격제한, 착오거래 구제제도 개선 및 거래의 취소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파생상품시장의 거래 및 결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호가의 실시간 가격제한

#### □ 실시간 가격제한 제도의 적용 대상 (제60조의2 신설)

- 시황을 잘 반영할 수 있고 유동성이 풍부한 8개 상품\* 및 종목\*\*에만 적용
  - \* 적용상품 : 코스피200선물·옵션, 주식선물(거래소가 기초주권별로 별도로 정함), 통화(달러·유로·엔)선물, 국채(3년·10년)선물. 선물거래의 경우 선물스프레드 거래를 포함
  - \*\* 적용종목 : 최근월종목, 차근월종목, 최근월물과 차근월물간 스프레드종목

#### □ 가격변동폭 설정 (제60조의3 및 별표 25 신설)

- 상품별 특성, 유동성 및 과거 가격변동 수준을 감안하여 가격변동폭 설정
  - \* 상품별 가격변동폭 : 1%(코스피200선물 · 달러선물), 2%(코스피200옵션), 0.5%(3년국채선물), 0.9%(10년국채선물), 3%(유로 · 엔선물), 주식선물은 기초주권별 가격변동 수준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함(3% ~ 5%)

#### □ 실시간 가격제한의 적용해제 (제60조의4 신설)

- 직전약정가격이 기초자산 가격 등 시장상황과 상당히 괴리된 경우 실시간 가격제한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해제\*
- \* 적용해제, 재적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용

## □ 시장가호가의 전환 및 기록 관련 명시 (제67조의2 신설)

- 시장가호가의 가격이 실시간 가격제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시점에서 지정가호가로 전환\*

\* 전환 전 시장가호가의 우선순위(접수시간)를 기준으로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기록

## □ 최유리지정가호가의 실시간 가격제한 (제3조)

- 매도 최유리지정가호가의 최저가격은 실시간하한가로, 매수 최유리지정가호가의 최고가격은 실시간상한가로 제한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

## □ 미적용 상품·종목 및 적용해제 시 호가의 입력 제한 (제49조의2 및 제50조)

- 실시간 가격제한 미적용 상품 및 종목의 경우 지정가호가만 허용
  - 시장가호가, 최유리지정가호가 및 조건부지정가호가의 입력을 제한\*
  - \* 주식선물거래 및 주식옵션거래도 지정가호가만 허용
- 적용상품도 실시간 가격제한 적용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지정가호가 및 조건부지정가호가만 허용\*
- \* 회원의 호가적합성 점검 항목에서는 제외

## □ 실시간 가격제한 적용 시 호가의 효력 제한 (제53조)

- 실시간 가격제한 적용 시 이미 접수된 호가 중 실시간상한가보다 높은 매수호가 및 실시간하한가 보다 낮은 매도호가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\*
- \* 시장가호가는 실시간상한가 또는 실시간하한가의 지정가호가로 전환

## □ 호가의 정정 제한 (제54조)

- 호가 정정 후 실시간 가격제한범위를 벗어나거나, 정정 전·후 호가 가격이 동일하여 기존 호가가 후순위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호가의 정정을 제한

## 나. 착오거래 구제제도 개선

### □ 직권구제 제도의 도입에 따라 구제요건 강화 (제78조의2 및 별표24)

- 손실금액 합계가 상품별 100억원 이상일 것, 동일한 착오로 체결된 거래일 것, 구제제도를 악용하지 않을 것, 구제 필요성 등으로 요건 강화\*

\* (변경전) 당사자간 합의, 종목별 10억원 → (변경후) 직권구제, 상품별 100억원 등

### □ 회원의 신청방법 간소화 (제78조의3 및 별지 제15호 신설)

- 시스템을 통한 신청방식에서 서면(별지 제15호)에 의한 신청도 허용하되 신속한 구제결정을 위해 신청시한을 착오발생 후 30분 이내\*로 제한
  - \* 착오거래 지속 또는 회원파생상품시스템 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 연장 가능
- 착오회원은 구제 신청 후 지체없이 거래소에 소명자료 제출

### □ 착오거래의 구제방법 개선 (제78조의4)

- 거래소는 구제 신청내용,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착오거래의 구제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구제 가능\*
  - \* 착오거래 발생일 장종료 후 30분까지 구제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되, 신청 및 소명 자료의 제출시점과 내용, 거래상황과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다음 거래일 장종료 후 30분까지 연장 가능
- 착오거래 구제결정 시 체결가격을 기존 합의가격에서 착오거래구제 상단·하단가격\*으로 변경하여 직권 구제
  - \* 다만, 거래 및 시장상황, 기초자산의 가격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구제가격 변경 가능
- 착오 발생일(장종료 후 30분까지)에 구제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불리한 가격(신청회원: 약정가격, 상대방회원: 구제가격 등)으로 결제하고, 구제 여부 결정 후 결과에 맞게 결제차액 등을 사후 정산
  - \* 회원과 위탁자 간에도 동일한 방식을 준용하여 결제금액 및 위탁증거금액을 산출

□ 구제여부 확정 시 마진콜 추가예탁 해소 간주 (제150조 및 제151조)

- 착오 발생일에 구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착오자는 약정가격, 상대방은 구제가격을 기준으로 증거금을 산출하여 마진콜이 발생한 경우
  - 구제 여부 확정에 따른 정산 결과 예탁총액(예탁현금)이 증가하여 착오 발생일의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유지위탁증거금액(유지현금 예탁필요액)을 충족한 경우에는 마진콜 해소로 간주

다. 거래의 취소

□ 거래 취소 시 시장 공표 (제78조의5 신설)

- 거래소는 거래의 취소를 하는 경우 홈페이지, 회원 단말기 등을 통하여 지체없이 해당 사실을 공표

라. 기타

□ 기타 조문정비 (제67조의3 및 제110조)

3. 참고사항

□ 심사등 : 전략기획부 심사완료(심사연번호 : 제14-137호)

□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